

OECD 국민계정 전문가회의
참가결과 보고

OECD Meeting of National Accounts Experts
Paris, 8~11 October 2002

2002. 12

통 계 분 석 과
통 계 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차 례

I. 출장개요	
II. OECD 국민계정 전문가회의	
1. 회의개요	
2. 회의 주요내용	
3. 2003년 회의주제 및 일정	
4. 회의 참가 소감	
III. 주제발표 및 회의내용	
1. 회의주제 및 일정	
2. 회의내용	
붙임: 1. 회의록 및 SNA와 신경제 요약	
2. 회의일정 및 주제(Draft Agenda)	
3. 회의록 및 SNA와 신경제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OECD National Accounts Experts)	
(Beyond 1993: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New Economy)	
4. 참가자 명단	
5. 주요발표논문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통계청 통계분석과 우사임사무관
2. 출장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민계정 전문가회의 참가
3. 출장기간 : 2002. 10. 8 ~ 10. 11
4.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

II. OECD 국민계정 전문가회의

1. 회의개요

- 회의목적 : 국민계정과 관련된 개념, 통계자료 및 추계방법 등에 대한 권고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
- 회의주관 : OECD 경제통계국 국민계정과
의장 : Mr. Francois Lequiller (국민계정과 과장)
- 회의기간 : 2002. 10. 8 ~ 10. 11
- 회의장소 : OECD 본부 제2회의실
- 참 가 자 : 총 127명
OECD 14명, Eurostat 4명, IMF 2명, UNSD 1명 각 국가 대표
한국 : 통계청 통계분석과 우사임사무관,
한국은행 한국대표부 김양주팀장, 국민소득팀 조용길과장

2. 회의 주요내용

- 가계저축의 새로운 측정방법
 - 저축측정의 새로운 방법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안과 OECD에서 발간하는 저축률에 있어서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 저축 = 소득 - 소비
순저축 보다 가계자산순증의 분석이 유용

- 소프트웨어(Software)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측정
 - OECD task force의 권고안
 - 소프트웨어(Software)를 원본과 복사본 모두에 대해 1년 이상 사용시 그리고 1년이상 사용목적의 Software 임차료 지불도 모두 투자로 처리하도록 권고
 - OECD task force의 software 측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함
- 보험
 - 보험지급금의 처리를 실제보험지급금이 아니고 기대보험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비생명보험의 생산변동을 완화하고자함
- 국민계정 관련자료의 수집 및 배포
 - 국민계정 자료를 적기 이용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계정 코드 표준화 작업(NAWWE Project)을 시작하고 여기에 참여할 국가의 신청을 받았음(호주, 영국, 프랑스 신청)
- 국민계정과 PPP
 - PPP의 시계열자료와 국민계정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두 자료간의 관계 분석 관련 논의 및 가격효과를 제거한 주거서비스의 비교 관련 논의
- 일반정부, 금융서비스 및 금융계정
 - 일반정부의 연금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
 - 금융서비스 task force의 첫 보고서 발표와 향후 계획 논의 (2003년 NAEM에서 최종보고 예정)
 - 세분된 금융관련 자료의 국제비교 증진에 관한 논의와 부실거래 및 비상장주식의 국민계정내에서의 처리에 대하여 논의
 - 국민계정내에서 스톡옵션의 처리를 피용자보수에 포함여부 및 반영시점(계약시점, 옵션부여시점, 행사시점)에 대하여 논의
- 기타
 - UN내 국민계정 실무회의(ISWGNA)의 향후 토의 주제
 - IMF에서 연구중인 역거래 채권의 처리 문제 등 논의
 - 기업 생산성의 국제비교와 경제환경 변화의 국민계정 반영 여부
 - 비금융자산에 대한 캔버라그룹의 첫 모임으로 향후 토의 주제, 참가자 범위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3. 2003년 회의주제 및 일정

- 회의 주제
 - 보험 : OECD 주관, Task Force 1 계속
 - 금융서비스 : OECD 주관, Task Force 2 계속
 - 자산 : 캔버라 그룹 II 주관, Task Force 3 구성
 - 2003년 5월 가동
 -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연구
 - 연금체계에 대한 연구 : IMF와 호주에서 주관
- 회의 일정
 - Oct. 7~9 2003 (잠정)

4. 회의 참가 소감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다소나마 구체적으로 인식
 - 특히 서비스산업(금융업포함) 분야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통계 작성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기타 연구검토 분야 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국민계정통계에서 각 계정별로 각각의 통계를 통하여 정책결정 및 평가를 위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하는 통계작성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상기
- 논의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직접 작성한 경험이 없는 계정(금융계정, 대차대조표 등)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계정 실무 경험이 2~3년이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람이 참석토록하는 배려가 필요

III. 주제발표 및 회의내용

(<http://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425-15-no-20-31122-0,00.html>)

1. 회의주제 및 일정

2002. 10. 8 (화)

- 1) 가계저축의 새로운 측정방법
 - 저축률의 다양한 측정과 해석
 - 가계저축의 새로운 측정
 - 수요자입장에서의 저축률 측정
 - 핀란드 가계부문으로 본 종사자 스톡옵션과 보유이익
 - 저축의 새로운 측정
- 2)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TC)의 측정
 - OECD task force의 국민계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측정 관련 최종보고서
Report of the OECD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 소프트웨어 task force로부터의 교훈
(Lessons From the Software Task Force)

2002. 10. 9(수)

- 3) 보험
 - 보험에 관한 OECD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
- 4) 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
 -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국 자료의 상황
 - NAWWE 프로젝트
The NAWWE Project(National Accounts World Wide Exchange)
 - 정부의 총지출에 대한 새로운 정의
New Definition of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 NIPA(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에 있어서의 통계표 중복
 - OECD의 통계용어 정의
- 5) 국민계정과 PPP
 - 국민계정상 주거서비스 측정에 관한 설문
 - PPP 해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 PPP 시계열의 결정

6) 일반정부

- 정부 연금체계의 처리
- 호주 국민계정상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기록원칙

2002. 10. 10(목)

7)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에 관한 OECD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

8) 금융계정

- 미국 일본 유럽의 가계자산 비교
- 비상장주식의 측정

9) 역거래 및 부실대출

- 역거래의 거시경제적 통계처리
- 부실대출의 거시경제적 통계처리

2002. 10. 11(금)

10) 스톡옵션

- 국민계정상 스톡옵션의 처리
- 스톡옵션의 진전

11) 기타

- 기업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
- ISWGNA의 향후 일정 소개
- 2003년의 주제
 - 보험 (Task Force 1 : OECD주관, 계속)
 - 금융서비스(Task Force 2 : OECD주관, 계속)
 - 자산(Task Force 3 : 캔버라 그룹 II)
 - 2003년 5월 가동
 -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연구
 - 연금체계에 대한 연구(IMF와 호주에서 주관)
- 2003년 회의 일정
 - Oct. 7~9 2003 (잠정)

12) 비금융자산의 측정을 위한 Canberra Group II의 첫 번째 모임

- 자산에 대한 기본적 이슈 제기
- Canberra Group II의 연구 주제결정을 위한 토론
- 결정사항
 - 참석자의 범위, 연구주제

2. 회의내용

□ 가계저축의 새로운 측정방법

○ 저축률의 다양한 측정과 해석

The Various Measures of the Saving Rate and Their Interpretation

By Cedric Audenis, Stephane Gregoir, Claudie Louvot(INSEE, France)

- 저축률은 단기적으로 경제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자본으로 경제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임
- 이러한 저축률이 미국과 영국은 1%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는 16%로 국제비교에 문제를 제기 하고 국제비교를 위해서 측정된 저축률은 일반적인 경제해석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도 민감하지 않아야 함
- 저축률의 대안은 우선 소득과 소비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임
 - 정부 및 NPISH에서 가계에 제공하는 현물을 소득에 포함한 조정가처분소득을 사용하고 연금의 수취액에서 부담액을 제외한 순수취 연금을 반영한 소득을 사용
 -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소득에서 차감하고 소비에서도 차감하여야 하며 자산의 가치하락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됨
 - 간접세비율: 유럽 25-22%, 프랑스 18.5%, 미국 6.5% 일본 7.8%
 - 고정자산에대한 소비 : 미국 영국 4%, 독일 6%, 프랑스 5%
 - 자본이득에 대한 고려와 내구재소비를 자산의 구입으로 처리
 - 자본이득은 이자나 배당금과 같이 생산으로부터 파생되는 본원소득이 아니나 자본이득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자본이득은 가계의 부를 변화시켜 저축률의 변화에 영향을 줌
 - 현실적으로 자본이득의 자료는 자본이득세의 부과에서 잡히지만 면세되는 경우도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낮음
 - 내구재를 투자로 보아 내구재 이용에 따른 서비스의 소비를 추정해야 하고 또한 자산의 가치하락을 고려하여야 함

○ 저축의 새로운 측정

Alternative Concepts of Savings: Estimates for Australia

by ABS(Australia)

-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ncome is often defined as the maximum amount that a household, or other unit, can consume without reducing its real net worth(93SNA 8.15)

- 새로운 개념의 저축 : 순자산가치의 변동
- 호주의 저축률은 60년대에 9%에서 90년대에는 2%로 낮아졌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저축은 이론적으로 소득계정으로부터 구하거나 금융계정에서 역으로 작업하여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같아야 하나 자료의 오차와 누락으로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별히 고인플레이션 기간동안에는 대차대조표로부터 소득과 저축의 귀속가격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저축은 가처분소득과 최종소비지출의 차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두변수의 개념을 변경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됨
 - 실질이자율과 보유손익을 감안하여 측정된 순저축
 - 교육에 대한 지출 및 내구재 소비에 대한 지출을 감안한 저축
- 교육에 대한 지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출, 국방설비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소비로 보지 않고 투자로 보고 저축 조정
- 투자를 위한 가용자원으로 순저축보다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보편적인 측정치며 순저축률보다 GDP에 대한 순자산가치의 변화 비율이 일부 분석에는 유용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TC)의 측정

- OECD task force의 국민계정상 소프트웨어 측정 관련 최종보고서
Report of the OECD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 93SNA에서 소프트웨어의 자본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측정방법의 차이, 무엇이 소프트웨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2001년 10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개념정의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정 권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OECD Task Force가

구성되었음

- OECD Task Force의 권고안

- 1) 사용권은 원본의 재생산의 일부로 보며 모든 자가계정의 소프트웨어는 투자로 처리
 - 자가계정의 소프트웨어를 update할 경우 추가된 가치만 반영하고 원본을 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처리
 - 1년 이상의 사용권 및 임대료도 투자로 처리
 - 재생산 권리에 대한 비용 및 로열티는 중간소비로 처리
-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성 : 소프트웨어 상품,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 로열티와 사용료
- 3) 가격지수 : 주문용, 자기개발용, 패키지용으로 구분하여 처리
- 4) 사업체조사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함
- 5) 도소매업을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컴퓨터 서비스를 파악하게 되도록 로열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자가계정의 소프트웨어는 개발비용으로 평가

○ 소프트웨어 task force로부터의 교훈

(Lessons From the Software Task Force)

-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을 자본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계정 작성자는 R&D도 자본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나 이러한 처리가 GDP가 아니라 N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 Accounting for Software Licences in National Accounts
소프트웨어 원본은 복사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계란 개념임
소프트웨어는 우선 첫단계로 원본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로 복사본을 생산하는 것임
- 테스크 포스의 목적중 하나는 국제비교의 개선
1년 이상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형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원본과 복사본 모두 무형자산인데 이것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

□ 보험

- 보험에 관한 OECD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
Report of the OECD Task Force on the Treatment of Non-Life Insurance in the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 of Payments
 - 93SNA에서 비생명보험의 생산은 보험부담금에서 보험지급금을 차감하여 간접적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재난과 같은 경우 생산이 마이너스가 됨
 - 따라서 보험지급금의 처리를 실제 지급금이 아닌 지급금의 기대치로 작성하여 비생명보험업 생산의 변동을 완화하고자 함
 - 태스크 포스의 논의 내용
 - 1) 실제 보험지급금 대신 기대지급금을 사용함에 따라
 - 기대지급금에 대한 기본적 개념
 - 기대지급금의 확률
 - 기대지급금을 사용함에 따른 기타계정에의 영향
 - 2) 예외적인 손실에 따른 자본이전으로서의 보험지급금의 처리
 - 3)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와 자본이전의 국제적 flow 격차에 대한 처리
 - 내년에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 제출예정
 - 국제수지(BoP) 위원회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OECD 태스크포스와 공동 연구 필요
 - 1) 개념적 연구
 - 2) 통계적 측정 관련 연구
 - 3) 보험의 행태와 보험시장에 대한 연구

□ 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

-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국 자료의 상황
Annual an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Data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in the OECD
 - OECD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계정을 생산하고 OECD에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기관에 OLIS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됨
 - 분기자료 : 한국, 영국, 그리스, 멕시코, 터어키, 스페인의 경우 분기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OEC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 NAWWE 프로젝트

The NAWWE Project(National Accounts World Wide Exchange)

국민계정 코드 표준화(standard codification scheme)의 우선 적용을 지원한 호주, 영국,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서 Test하기로 하였으며 노르웨이, 캐나다는 참여여부를 검토

○ OECD의 통계용어 정의

- OECD 통계용어 정리(Overview of OECD Glossary of Statistics Terms) : OECD에서는 통계용어 및 개념정리를 OECD website (www.oecd.org/statistics/glossary)에 올렸으며 아직도 작업중에 있음

□ 국민계정과 PPP

○ 국민계정상 주거서비스 측정에 관한 설문

- 국민계정 및 PPP에서의 주거서비스 추정
 - 주거서비스에 대한 측정, 특히 자가주택서비스에 대한 측정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거서비스 통계의 개선은 단기에 있어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주택자산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함.
 - 반면 PPP의 비교에서는 각 국가의 가격효과를 제거하고 주거서비스의 양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임.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나라(장소)를 무시하고 주거자산의 요소를 자세히 조사하여 비교
 - 주거자산의 요소 : 주택형태, 방수, 주거면적, 건축연도, 설비종류, 시부 또는 군부 등. 주거자산의 요소에 대한 설문지로 의견수렴중

○ 국민계정과 PPP

- 프랑스는 유럽국가의 비교에 중점. 지난 7년간 GDP의 상대적 양적 증가와 PPP로 디플레이트한 GDP의 증가간 차이가 클 수 있음(덴마크 9%, 프랑스 -6%)
- GDP 성장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면 PPP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 PPP 프로그램은 1) 국민계정과 PPP 기준 GDP와의 일관성 2)가격수준의 부문간 비교 3) 늦게 제거된 명백한 착오의 체계적인 개정 4) GDP뿐

- 만 아니라 최종소비지출의 비교성 개선 등에 힘을 집중해야 함
- 영국은 건설부문에 대한 개인전문가의 추정치가 더 조절가능하며 특히 중고품에 대한 추정역시 그러하다는 프랑스의 의견을 지지. 러시아는 CIS 국가들을 위한 건설부문의 추정을 위한 일관된 체계를 소개하였고 덴마크는 PPP에 의한 계정으로 수정된 국민계정의 개선을 요구
 - OECD 페이지는 프랑스에 의해 제기된 유럽과 비유럽 OECD 회원국으로 확대한 분석에서의 차이를 인정 (1990-1999: 호주 -4.8%, 일본 -3.2%).
 - 이모임은 국민계정과 PPP 로 디플레이트된 시계열자료 사이의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대부분 PPP프로그램 결과 시기의 일관성에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 PPP로 디플레이트 된 시계열자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의 권고안에 동의함
 - 벤치마크로 국가적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비교에 기초한 자료를 점검
 - 가격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PPP자료의 개선의 원칙을 수용
 - PPP프로그램에서 NA자료의 개정을 포함
 - PPP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려운 분야, 특히 주거, 비시장서비스, 기계 및 공구, 건축 분야를 점검
 - 국내최종지출 및 소비에서 PPP의 이용을 권장. 미국 캐나다 등 실제최종소비를 변환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렇게 하도록 주문
 - 보다 일반적으로 PPP작업에 국민계정가들의 참여를 독려

□ 일반정부

- 정부의 연금체계의 정리
 - IMF는 비기금형 피고용자 연금의 처리에 대한 전자토론그룹(EDG)을 결성. 현재 일반정부계정에 비기금형 피고용자연금의 implicit liabilities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SNA의 권고안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EDG의 토론은 단순히 일반정부의 피고용자 연금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
- 호주 국민계정상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기록원칙
 - 호주는 일반정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관한 논문을 발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일반정부계정의 해석, 특히 분기자료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

음. 이주제는 2003년 NAEM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에 관한 OECD task force의 첫 번째 보고서
 - 모임의 이부분은 태스크포스의 의장이었던 Mr. Ruth Meier(스위스)가 의장을 맡았음. 금융서비스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작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고 이모임의 다음 3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았음
 - 1) 금융기관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는가?
 - 2) 위험관리의 활동, 금융중개 및 금융보조 활동은 금융기관의 중요업무를 적절하게 포착하는가?
 - 3) 고유기금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원천에 포함될 수 있는가?
 - 호주와 미국은 처음 두질문에 동의하나 세 번째에 관해서는 유보. 호주는 고유기금의 사용은 자가계정의 형성이며, 금융기관의 자가계정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계정은 비금융기관의 중간소비로 기록할 수도 없음. 미국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기금이 고유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수신고로부터의 대출이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기. 3번째 질문의 답은 긍정이 될 수 있을 것임. 공동기금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측정의 문제를 야기. 오스트리아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모두 동의하기 전에 기관의 활동이 1993 SNA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금융보조기관인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기. UN은 고유기금의 대역은 아주 중요하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조한다고 지적.
 - 다음은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
 - 1) 이 페이지에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리스트가 있는가 ?
 - 2) 이 리스트가 예금/대출의 경우 이외에 적용될 수 있는가 ?
 - 3) 일반적으로 태스크포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 호주는 처음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호주통계청의 작업결과의 송부를 제의. 상대거래가 올바르게 계정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 3번 질문의 답도 긍정이지만 태스크포스는 금융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투입의 처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호주는 또 가격과 물량 이슈도 고려하고 호주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분야에 일정작업을 수행하였음. Eurostat는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지지하나 금융

중개의 개념이상으로 분명한 것이 없음. 모기업의 금융지원 등 분명한 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등을 보다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영국은 좀더 실제적인 적용이슈를 다루어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개념적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case study의 제공을 주문. 독일은 어떤 금융서비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번 질문의 답이 어렵다는 것을 제기.

- 실현된 보유손익의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에 미국은 보유손익은 분명 생산이 아님. 암묵적 서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재산소득과 같이 지불되나 보유손익으로부터 소득의 기대치로 제공 될 수 있음
- 테스크포스의 다음 미팅이 2003년 2월 4일에서 5일에 파리에서 있을 것이며 최종보고는 2003년 NAEM에서 발표될 것임. 테스크포스는 case study를 기초해 실제적 이슈의 적용과 개념적 종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금융계정

- 미국 일본 유럽의 가계자산 비교
 - 금융자산을 재검토하고 가계의 재산 분석에 더 적절한 범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 예를들면 생명보험과 연기금사이의 분류가 곤란한 경우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별로 기록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게 됨
 - 일본은 국민계정상 보험의 처리에 있어서 상호생명보험의 경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간제약으로 논의하지 못하였음

A) 비상장주식의 측정

- 모든 금융계정 통계표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을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비상장주식의 추정에서는 가계에 배분된 투자량, 특정일에의 가치평가, 매년 재평가방법 3가지에 어려움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산출물의 비율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예로 호주는 판매의 60%를 미국투자기업에서 이루어져 그룹의 상장주식의 60%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
- 영국은 모기업이 직접투자하고 소유한 경우와 작은기업으로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건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많은 수의 작은 기업의 평가에 있으며 캐나다는 시장가치를 장부가격에 mark-up(Break-up value)을

더하여 추정.

B) OECD 데이터베이스의 금융계정 상황

- 금융계정은 매우 약함. 작업팀은 OECD 회원국을 위해 금융계정통계를 계속 발표할 것인가 혹은 금융통계로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주문하였고 계속하여 금융계정통계 작업팀에서 각국과 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는데 동의
 - OECD는 어떤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 캐나다는 금융계정과 대차대조표는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로 이용되기에는 너무 높은 정도(high-level)의 통계임을 지적
 - 자료의수집과 국제비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는 가계의 순재산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임. 특히 가계의 부동산,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충분한 자산과 플로우를 작성하는 나라는 소수임.
- 이모임은 Eurostat와 OECD 자료프로그램에서 가계의 자산계정과 대차대조표변동을 다루는 새로운 통계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자산 및 부채의 보다 유용하고 분석에 적합한 분류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융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금융계정 관련 논의를 OECD 대표부(directorate)와 통계작업팀(DAFFE)에 주문

□ 역거래 및 부실대출

- 역거래 및 부실대출의 거시경제적 통계처리
- IMF는 국민계정에서 부실대출의 처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SNA의 발생이자 처리에 의문제기. 따라서 IMF는 SNA의 가능한 수정에 관한 전자토론그룹을 구성하였음
- SNA에서 부실대출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IMF의 부실대출에 관한 전자토론에 많이 참석하여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2003년 NAEM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IMF의 통계국에서 발표한 논문 ‘역거래의 통계적 처리’를 검토. IMF의 BoP위원회는 담보대출 접근방식을 지지했다고 보고. 담보대출과 금교환 관련한 비용은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음
- 담보대출 접근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IMF의 BoP통계위원회가 원칙에

대체로 동의하고 OECD 금융통계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 따라서 이주제는 ISWGNA가 마무리할 단계에 있고 자산대여나 금대출 비용에 관하여는 논의되지 않아 이는 계속 논의 될 수 있음

□ 스톡옵션

- 국민계정상 스톡옵션의 처리
 - 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하나는 OECD에 의해 구성된 전자토론클럽의 토론내용을 호주에서 정리한 것이고 하나는 Eurostat에서 준비한 것이며 OECD는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처리: 국민계정체계는 피고용자 스톡옵션(ESO)이 피용자 보상의 한부분으로 간주하고 피용자보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식. 피고용자 스톡옵션은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에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자본계정에서는 파생금융으로 기록되어야 함. 주식의 원천은 국민계정의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평가시점: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한부여일(vesting day) 또는 vesting 전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가능일을 지지함.
 - 보상시기: SNA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계약일과 권한부여일 사이의 기간에 분할처리. 이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대안으로 권한 부여일에 기록
 - 평가: 옵션에 대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시장가격으로 평가.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옵션가격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 시장가격에 가장 유사한 자료를 얻어야 하며 권한부여일과 행사일(exercise date)간의 가격차는 피고용자의 보유손익으로 봄
 - 이태리 국민계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피용자보수로만 분류되지 않고 자유업자의 보수로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자 함. IMF는 기본적으로 원칙들에 동의 하나 파생금융으로 옵션의 분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OECD의 금융통계팀은 이이슈의 재검토를 제의. 핀란드는 현재는 스톡옵션을 피용자보수로 분류하지 않으나 스톡옵션과 피용자보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 프랑스도 이원칙에 동의. 영국,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기구들(IASB, FASB)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

- OECD와 호주에서 발표한 EDG의 보고서에 기초한 5가지 원칙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 아울러 보수의 새로운 하부분류, 파생금융으로서의 옵션에 대한 재검토, 스톡옵션이 주식발행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제시, cross border 스톡옵션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등에 동의. 그러나 이문제를 끝내기 전에 SNA 포함여부를 ISWGNA에 제출하고 다음 가을에 있을 IASB의 자세한 권고안을 기다리기로 함. OECD와 Eurostat는 IASB권고안 공표후 제안서를 ISWGNA에 제출하기로 함

□ 기타

- 기업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
 - 영국은행은 수익성의 국제비교와 관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음. 몇몇나라들은 자료의 비교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 OECD는 자료의 비교성의 부족으로 이작업을 계속할 계획이 없음을 언급.
- ISWGNA의 향후 일정 소개
 - UN에서 ISWGNA가 2003년 3월 UN 통계위원회에 93SNA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림. ISWGNA의 자문단 회의가 UN 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에 열릴 것임
- 2003년의 주제
 - 보험 : Task Force 1 (OECD, 계속)
 - 금융서비스 : Task Force 2 (OECD, 계속)
 - 자산 : Task Force 3(캔버라 그룹 II)
 - 2003년 5월 가동
 -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연구
 - 연금체계에 대한 연구 : IMF와 호주에서 주관
- 2003년 회의 일정
 - Oct. 7~9 2003 (잠정)

□ 비금융자산의 측정을 위한 Canberra Group II의 첫 번째 모임

- 자산에 대한 기본적 이슈 제기
 - 유형 고정자산 : 개념적인 이슈
 - 소유권이전 비용의 처리
 - 국방자산의 처리
 - BOOT(buy/own/operate/transfer)체계의 처리
 - 고정자산 측정상의 이슈
 - 자산가격지수
 - 철거비용 등
 - 유형 비생산자산 : 땅, 등
 - 무형 고정자산 : 인적자산, 광물탐사 등
 - 무형 비생산자산 : R&D 지출, 특허, 오락문화의 지적재산권 등

- Canberra Group II의 연구 주제결정을 위한 토론
 - R&D는 이스라엘에서 제기한 R&D의 연구를 위한 working group의 주제와 중복되고 인적자산은 국민계정과 직접연관이 적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음
 - 국민계정과 직접 연관 많은 고정자산의 개념적 이슈와 실질적인 측정상의 이슈가 중요
 - 무형자산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
 - 무형자산은 새로운 경제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
 - City Group의 연구성과는 93SNA의 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93SNA의 개정은 아직 국민계정이 68SNA체계로 작성되고 있는 후진국 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 개정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경제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함

- 결정사항
 - 참석자의 범위
 - 다른 city- group과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개인도 참가 가능
 - 연구주제 : 전자토론그룹을 통하여 추가논의 예정

(Paul.Schreyer@OECD.org)

붙임 1. 회의록 및 SNA와 신경계

<회의록>

각 회원국은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대한 지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회원국 대표 등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 대개의 이슈는 93SNA와 관련되며, SNA의 개정은 UN의 국민계정실무작업팀(ISWGNA)을 통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ISWGNA에서도 이 모임에 참석하였음

I. 가계저축의 새로운 측정방법 논의

- 가계저축률은 가계소득에서 소비하지 않은 것을 측정. 1990년대에 저축률이 계속 낮아졌는데 현재의 의문은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가임. 저축의 개념과 측정에 관련된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분석하였음. 이 이슈는 금융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계의 재산도 함께 논의되었음
- 주목적은 경제학자의 분석에 보다 유용한 저축의 새로운 측정을 결정하는 것임. SNA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측정에 필요한 자료와 가계저축률의 국제비교를 개선하고자하는 것임. OECD 경제부는 소비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법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자료의 어려움(미국제외)을 함께 제기
-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으나 호주는 저축개념, 특히 실질순저축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 우선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의 측정은 순재산의 변화와 같은 개념임. 소비의 설명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측정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가구의 실제부동산 가치측정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A) 잠재적 및 실현된 자본이득

- 잠재적 자본이득과 실현된 자본이득의 가계소비 및 저축 행태에 대한 영향은 다를수 있음. 잠재적 자본이득의 추정엔 SNA의 기본이나 비상장주식의 자본이득 추정은 상당히 어려움. 자산의 거래가격은 평균가격과 다르며 가계 재산의 변화를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SNA는 총보유이익의 추정을 강제하는 반면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제공하지 않음. 가계의 잠재적 및 실현된 자본이득 추정에 대하여 논의

B) 자본이득세

- 자본이득은 SNA상 소득에서 제외되나 자본이득세는 소득에서 차감함. 이는 불합리하며 미국은 소득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자본이득세를 재분류할 것을 제의. 덴마크는 자본이득세를 정부의 경상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부문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 호주, 이탈리아, 핀란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자본이득세를 다른 소득세와 분리하는 작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의장은 다음해 NAEM에서 측정의 문제를 다루고 ISWGNA에도 이점을 지적하도록 제안.

C) 물가상승조정(inflation adjustment)

- 저축률은 물가상승에 따라 변화. 구매력으로 보면 개인의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고려한 자산의 가치가 이자를 고려한 부채보다 높을 경우 명목이자 오르면 개인저축은 증가하게 됨. 개인저축의 측정은 명목이자로부터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실저축 행태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것임. 물가상승효과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의 디플레이터를 평균잔액에 곱하여 추정

D) 내구소비재

- 가계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비금융자산의 중요성을 인식. 소비자는 내구소비재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반면 SNA는 소비재의 취득으로 처리함. 개인저축의 측정에서 내구소비재를 순투자로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1)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최종소비에서 제외
 - (2) 내구재로부터의 자본서비스는 소비와 소득에 포함
 - (3) 내구재에 대한 고정자본소모는 다른 자산의 고정자본소모에 추가
- 내구소비재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의장은 OECD와 Eurostat의 이행 프로그램에 내구재의 자산, 자본서비스, 감가상각 등에 대하여 포함할 것을 건의

E) 국제비교

- 프랑스는 OECD에 의해 발간된 저축률 자료의 비교성에 문제점을 지적. OECD는 가계의 순저축에 중점을 두었지만 나라별로 순저축을 제공하거나 총저축을 제공하고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포함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음. 의장은 앞으로 OECD는 순저축과 총저축을 분리하여 발표하고 적어도 혼재하여 발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
- 나아가 국가간의 차이 즉, 직접세와 간접세의 혼재, 시장과 비시장의 혼재, 기금형 연금과 비기금형 연금의 혼재 등은 저축률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유지 필요.

F) 간접세

- 다른 사정이 같다면 간접세의 비중이 큰 나라들의 소득이 높음. 따라서 간접세가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음. 기관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 SNA에서는 가계가 지불한 간접세에 관한 표준이 없음

G) 시장, 비시장 서비스, 조정된 가처분소득

- OECD가 종합한 저축률은 가처분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중임. 나라별로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생산비용은 정도는 다르지만 정부에 의해 결정됨. 이비용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으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률이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저축률의 국제비교에 더 적절

H) 연금기금

- 경상저축률은 연금이 기금형이냐 아니냐, 연금이 가계부문이냐 기업부문이냐, 등 연금 체계의 처리에 영향을 받음.
 - SNA는 연기금에 대하여 양면적인 처리를 권고. 가계의 분담금(고용주 분담금 포함)은 가처분소득으로부터 차감하는 반면 수혜금은 가처분소득에 포함함. 그러므로 순부담금이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줌. 동시에 순부담금은 금융자산이기때문에 금융계정에 기록됨. 어떤 나라는 생명보험과 연금체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처리와 다름. SNA는 가계연기금의 순증감항목을 도입하여 저축률 산출시 소득과 저축액 모두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기금과 생명보험을 거의 같게 처리하도록하는 SNA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음.
 - IMF가 SNA에서의 연기금의 처리에 대한 전자토론클럽을 구성함을 알리고 OECD는 이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는 한편 비교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계저축의 측정을 발전시키도록함.
- 의장은 실천적인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 OECD와 Eurostat의 자료처리프로그램은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의 재산에 대한 통계표를 포함
 - 실현된 자본이득뿐만아니라 내구소비재도 이 통계표에 포함하고, OECD는 자본이득세의 재분류 문제를 ISWGNA에 상정
 - OECD는 저축률 통계표를 개선 : 국가간 차이를 조정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순저축과 총저축을 별도로 작성

II. 국민계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측정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보고서

- Carol Moylan(BEA, USA)이 의장을 받은 이 Session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품 흐름법에 기초한 측정법과 디플레이터, 기업실사, 국제거래 및 개념적 이슈 등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대한 채택여부임
- 개념적 이슈 : 원본과 복사본 별개로 보고 각각 투자로 처리. 모든 자가계정 소프트웨어는 투자로 간주되고 총개발비용으로 평가함. 묶음이나 끼워팔기(중간소비로 처리)를 제외한 사용권도 투자로 처리. 1년이상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소프트웨어 비용도 투자로 처리함. 유지보수 비용은 중간소비로 기록.
- 국제무역 : 경상 국민계정은 소프트웨어의 수입과 수출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 추정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 국제수지통계는 소프트웨어 기록의 분리를 허용해야함
- 디플레이터 : 국제비교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필요한 경우 기존의 디플레이터를 조정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경우 환율을 적용한 미국의 가격지수를 이용하도록 해야하고 자가계정의 원본 가격지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가격지수에 달려있음

- 소프트웨어 투자의 추정방법 : 사실 기업계정은 특히 자가계정 원본 소프트웨어의 경우 SNA의 권고와 일치하지 않음. 기업체특별조사가 추정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어야 하나 등답자의 적대감에 의해 통계부담이 가중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타협점으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요점은 원본과 원본의 재생산이 별개이며 각각 투자로 처리. 영국은 이것이 이중계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았음. 노르웨이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투자로 처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점에 동의. 미국과 캐나다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동의. 호주는 이동전화에 대한 ISWGNA의 메모랜덤에서 제기된, 그리고 금융리스에 대하여 SNA상 논의된 경제소유권의 이전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야함을 지적. 프랑스는 이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것을 제의
- 의장은 이권고안을 변경하기 위해 논의할 수 모임은 아니라고 보며 이는 SNA와 보다 일관성이 있고 국제비교도 가능하며 기업계정의 원칙과도 일치함. 다만 이중계상의 문제는 캔버라그룹 II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임을 밝힘
- 영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의. 호주는 이중계상에 대한 논의가 캔버라그룹II에서 논의 될 것임을 상기시킴. 미국은 동의하지만 상품흐름법의 이용은 차선책을 전제.
- 의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하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권고안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국제비교를 개선하고 중간소비율에 보다 접근할 것으로 기대. 이중계상은 캔버라그룹II에서 논의될 것이며 2003년말이나 2004년에 간단한 현황조사예정

III. 보험연구 태스크포스의 첫 보고서

- 모임에서 이부분의 의장은 Mr. Jacques Magniez(INSEE, France)였음
연구진이 국민계정상 및 국제수지상 비생명보험의 처리에 대한 OECD 태스크포스의 첫 보고서 내용을 발표. 보고서는 이 작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SNA상 현재의 처리방법의 한계와 합리성을 설명하였고 작업중인 권고안(interim recommendation)을 만들었으며 문제시되는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작업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제안
- 1993 SNA는 비생명보험의 산출을 일정기간동안의 부담금과 추가부담금에서 청구권을 제외함으로써 간접추계하도록 제시하였음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비생명보험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왔으나 대 재앙의 경우에 1993 SNA의 처리에서 마이너스 산출을 허용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였음 따라서 산출의 계산에서 청구권의 기대액에 의해 청구권을 대체하는 방법이 권고안의 핵심임
- 몇몇 나라(호주, 미국)는 실제의 청구권을 기대 청구권으로 대체하는 권고안을 강력히

지지하였음 특히 호주는 기대청구권을 이미 이용하였음 다른 나라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향후의 연구가 끝날때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하였음 스위스는 재보험도 원수보험과 같이 취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

- 의장은 기대청구권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태스크포스의 향후 연구결과를 지켜보고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의 처리에서 수입과 수출의 국제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교환을 제안하였음
- 기대청구권의 추정 가능방법으로 미국은 단순히동평균방법(simple moving average method)와 가처분소득에서 대 재앙의 영향을 제외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였음
- 다른 계정에 대한 기대청구권의 영향을 보면 우선 기대청구권이 보험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추정이 되는 경우 국민계정상 실제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프랑스는 실제청구권이 기대청구권보다 크면 즉 이 초과 청구권을 연간 분담금으로 처리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경상계정에 표시할 수 없을 때 자본이전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음 호주는 소득계정의 2차분배계정에 실제 청구권만을 기록하고 총국민소득(GND)이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함께 하기 위해 소득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계정의 영향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이 모임은 보험산출의 추정을 위해 기대청구권 사용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제안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에서의 다음 제안들을 지지하였음
 - 1) 기대청구권의 현실적인 추정방법
 - 2) 특히 국제적 흐름에 있어서 대응되는 재보험의 처리에 대한 연구
 - 3) 제도부문에서 기대청구권과 청구권과의 차액에 대한 기록방법해결책중 하나는 자본계정에서 기대청구권과 청구권의 차액을 기록하는 것임태스크포스는 2003년 2월에 모임을 다시 가질 것이며 2003년 10월 국민계정전문가회의(NAEM)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것임

IV 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

- 금년에 국민계정자료의 OECD 수집은 상당히 진전되었음. 그러나 약속한 일정에 따라 자료를 보내지 않는 나라들이 아직 상당수 있음
- OECD는 Eurostat와 협력하여 연간자료와 일부 분기자료를 단순화하고 압축하는 전송 프로그램의 재설계를 준비중임. 자료교환의 기본원칙은 각국별로 자료공표날짜에 OECD로 자료를 보내는 것과 유럽국가의 경우 각국가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통계표가 의무적이지 않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의무적인 통계표로서의 기준과 일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임
- 2002년에서 2003년은 우선 단순화된 제도부문, 특히 일반정부부문 계정의 신속한 자료 전송에 중점. 가계의 재산에 관한 새로운 통계표가 요구될 것임. OECD는 순대차에 대한 모든 자료 및 DB를 통한 자료, 특히 이동전화 특허권 수입등의 배포는 ISWGNA의

권고와 일치하여야함.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 각 국가는 적절한 통계표를 보내야 함

- OECD는 정부지출과 수입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통계표를 만들 것을 알림. 유럽통합 1 개국가 접근을 위해 OECD는 새로운 연간 및 분기의 자료를 요구할 것임. 유럽지역은 총수입과 수출이 없는 상태가 되며 유럽의 각 국가는 자료의 주된 shortcoming을 줄이기 위해 내적 및 외적 흐름을 분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국민계정자료의 교환을 위해 web site와 SNA 코드를 이용하는 NAWWE 프로젝트를 소개. 2003년 3월에 시작하는 테스트에 참여할 지원국가는 호주, 영국, 프랑스이며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적기에 국민계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OECD는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자료 제공의 원칙은 자료가 공표된 날이 되는 것을 목표로함올해의 중점은 단순화된 제도부문 계정의 자료이며 몇몇 국가에서 NAWWE에의 참여를 신청

V. 국민계정과 PPP

- 프랑스와 OECD의 두 페이지는 GDP 시계열자료를 경상 PPP로 디스플레이한 자료의 신뢰성에 관하여 토론. 신뢰성은 GDP의 상대적인 양적 증가의 비교에 기초함
- 프랑스 페이지는 유럽국가의 비교에 중점. 지난 7년간 GDP의 상대적 양적 증가와 PPP로 디스플레이한 GDP의 증가간 차이가 클 수 있음(덴마크 9%, 프랑스 -6%). GDP 성장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면 PPP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 PPP프로그램은 1) 국민계정과 PPP 기준 GDP와의 일관성 2)가격수준의 부문간 비교 3) 늦게 제거된 명백한 착오의 체계적인 개정 4) GDP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지출의 비교성 개선 등에 힘을 집중해야 함
- 영국은 건설부문에 대한 개인전문가의 추정치가 더 조절가능하며 특히 중고품에 대한 추정역시 그러하다는 프랑스의 의견을 지지. 러시아는 CIS 국가들을 위한 건설부문의 추정을 위한 일관된 체계를 소개하였고 덴마크는 PPP에 의한 계정으로 수정된 국민계정의 개선을 요구
- OECD 페이지는 프랑스에 의해 제기된 유럽과 비유럽 OECD 회원국으로 확대한 분석에서의 차이를 인정. 비슷한 차이들이 나타남(1990-1999: 호주 -4.8%, 일본 -3.2%).
- 이모임은 국민계정과 PPP로 디스플레이된 시계열자료 사이의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대부분 PPP프로그램 결과 시기의 일관성에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 PPP로 디스플레이된 시계열자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의 권고안에 동의함
 - 벤치마크로 국가적 디스플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비교에 기초한 자료를 점검
 - 가격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PPP자료의 개선의 원칙을 수용
 - PPP프로그램에서 NA자료의 개정을 포함

- PPP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려운 분야, 특히 주거, 비시장서비스, 기계 및 공구, 건축 분야를 점검
- 국내최종지출 및 소비에서 PPP의 이용을 권장. 미국 캐나다 등 실제최종소비를 변환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렇게 하도록 주문
- 보다 일반적으로 PPP작업에 국민계정가들의 참여를 독려

VI. 금융서비스

- 모임의 이부분은 태스크포스의 의장이었던 Mr. Ruth Meier(스위스)가 의장을 맡았음. 금융서비스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작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고 이모임의 다음 3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았음
 - 1) 금융기관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는가?
 - 2) 위험관리의 활동, 금융중개 및 금융보조 활동은 금융기관의 중요업무를 적절하게 포착하는가?
 - 3) 고유기금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원천에 포함될 수 있는가?
- 호주와 미국은 처음 두질문에 동의하나 세 번째에 관해서는 유보. 호주는 고유기금의 사용은 자가계정의 형성이며, 금융기관의 자가계정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계정은 비금융기관의 중간소비로 기록할 수도 없음. 미국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기금이 고유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수신고로부터의 대출이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기. 3 번째 질문의 답은 긍정이 될 수 있을 것임. 공동기금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측정의 문제를 야기. 오스트리아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모두 동의하기 전에 활동이 1993 SNA에 딸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금융보조기관인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기. UN은 고유기금의 대역은 아주 중요하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조한다고 지적.
- 다음은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
 - 1) 이 페이지에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리스트가 있는가 ?
 - 2) 이 리스트가 예금/대출의 경우 이외에 적용될 수 있는가 ?
 - 3) 일반적으로 태스크포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 호주는 처음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호주통계청의 작업결과의 송부를 제의. 상대거래가 올바르게 계정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 3번 질문의 답도 긍정이지만 태스크포스는 금융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투입의 처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호주는 또 가격과 물량 이슈도 고려하고 호주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분야에 일정작업을 수행하였음. Eurostat는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지지하나 금융중개의 개념이상으로 분명한 것이 없음. 모기업의 금융지원 등 분명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등을 보다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영국은 좀더 실제적인 적용이슈를 다루어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개념적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case study의 제공을 주문. 독일은 어떤 금융서비

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번 질문의 답이 어렵다는 것의 제기.

- 실현된 보유손익의 처리에 대한 제기에 미국은 보유손익은 분명 생산이 아님. 암묵적 서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재산소득과 같이 지불되나 보유손익으로부터 소득의 기대치로 제공 될 수 있음
- 테스크포스의 다음 미팅이 2003년 2월 4일에서 5일에 파리에서 있을 것이며 최종보고는 2003년 NAEM에서 발표될 것임. 테스크포스는 case study를 기초해 실제적 이슈의 적용과 개념적 종합을 위해 노력할 것임

VII. 금융계정

- 금융자산을 개검토하고 가계의 재산 분석에 더 적절한 범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 예를 들면 생명보험과 연기금사이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명확하지 않아 각국별로 기록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게 됨
- 일본은 국민계정상 보험의 처리에 있어서 상호생명보험의 경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간제약으로 논의하지 못하였음

A) 비상장주식의 측정

- 모든 금융계정 통계표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을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비상장주식의 추정에서는 가계에 배분된 투자량, 특정일에의 가치평가, 매년 재평가방법 3가지에 어려움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산출물의 비율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예로 호주는 판매의 60%를 미국투자기업에서 이루어져 그룹의 상장주식의 60%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
- 영국은 모기업이 직접투자하고 소유한 경우와 작은기업으로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건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많은 수의 작은 기업의 평가에 있으며 캐나다는 시장가치를 장부가격에 mark-up(Break-up value)을 더하여 추정.

B) OECD 데이터베이스의 금융계정 상황

- 금융계정은 매우 약함. 작업팀은 OECD 회원국을 위해 금융계정통계를 계속 발표할 것인가 혹은 금융통계로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주문하였고 계속하여 금융계정통계 작업팀에서 각국과 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는데 동의
- OECD는 어떤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 캐나다는 금융계정과 대차대조표는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로 이용되기에는 너무 높은 정도(high-level)의 통계임을 지적
- 자료의수집과 국제비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는 가계의 순재산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임. 특히 가계의 부동산,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충분한 자산과 플로우를 작성하는 나라는 소수임.

- 이모임은 Eurostat와 OECD 자료프로그램에서 가계의 자산계정과 대차대조표변동을 다루는 새로운 통계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자산 및 부채의 보다 유용하고 분석에 적합한 분류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융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금융계정 관련 논의를 OECD 대표부(directorate)와 통계작업팀(DAFFE)에 주문

VIII. 부실대출(Non-performing loans)

- IMF는 국민계정에서 부실대출의 처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SNA의 발생이자 처리에 의문제기. 따라서 IMF는 SNA의 가능한 수정에 관한 전자토론그룹을 구성하였음
- SNA에서 부실대출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IMF의 부실대출에 관한 전자토론에 많이 참석하여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2003년 NAEM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X. 역거래

- IMF의 통계국에서 발표한 논문 '역거래의 통계적 처리'를 검토. IMF는 BOP위원회는 담보대출 접근방식을 지지했다고 보고. 담보대출과 금교환 관련한 비용은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음
- 담보대출 접근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IMF의 BoP통계위원회이 원칙에 대체로 동의하고 OECD 금융통계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 따라서 이주체는 ISWGNA가 마무리할 단계에 있고 자산대여나 금대출에 대한 비용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아 이는 계속 논의될 수 있음

X. 스톡옵션

- 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하나는 OECD에 의해 구성된 전자토론그룹의 토론내용을 호주에서 정리한 것이고 하나는 Eurostat에서 준비한 것이며 OECD는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처리: 국민계정체계는 피고용자 스톡옵션(ESO)이 피용자 보상의 한부분으로 간주하고 피용자보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식. 피고용자 스톡옵션은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에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자본계정에서는 파생금융으로 기록되어야 함. 주식의 원천은 국민계정의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평가시점: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한부여일(vesting day) 또는 vesting 전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가능일을 지지함.
 - 보상시기: SNA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계약일과 권한부여일 사이의 기간에 분할처리. 이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대안으로 권한 부여일에 기록
 - 평가: 옵션에 대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시장가격으로 평가.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옵션가격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 시장가격에 가장 유사한 자료를 얻어야 하며 권한부여일과 행사일(exercise date)간의 가격차는 피고용자의 보유손익으로 봄

- 이태리 국민계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피용자보수로만 분류되지 않고 자유업자의 보수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자 함. IMF는 기본적으로 원칙들에 동의 하나 파생금융으로 옵션의 분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OECD의 금융통계팀은 이 이슈의 재검토를 제의. 핀란드는 현재는 스톡옵션을 피용자보수로 분류하지 않으나 스톡옵션과 피용자보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 프랑스도 이 원칙에 동의. 영국,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기구들(IASB, FASB)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
- OECD와 호주에서 발표한 EDG의 보고서에 기초한 5가지 원칙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 아울러 보수의 새로운 하부분류, 파생금융으로서의 옵션에 대한 재검토, 스톡옵션이 주식발행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제시, cross border 스톡옵션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등에 동의. 그러나 이문제를 끝내기 전에 SNA 포함여부를 ISWGNA에 제출하고 다음 가을에 있을 IASB의 자세한 권고안을 기다리기로 함. OECD와 Eurostat는 IASB권고안 공포후 제안서를 ISWGNA에 제출하기로 함

XI. 기타(Open session)

- 영국은행은 수익성의 국제비교와 관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음. 몇몇나라들은 자료의 비교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 OECD는 자료의 비교성의 부족으로 이작업을 계속할 계획이 없음을 언급.

XII. 일반정부

- IMF는 비기금형 피고용자 연금의 처리에 대한 전자토론그룹(EDG)을 결성. 현재 일반정부계정에 비기금형 피고용자연금의 implicit liabilities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SNA의 권고안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EDG의 토론은 단순히 일반정부의 피고용자 연금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
- 호주는 일반정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관한 논문을 발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일반정부계정의 해석, 특히 분기자료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이주체는 2003년 NAEM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XIII. Proceeding

- UN에서 ISWGNA가 2003년 3월 UN 통계위원회에 93SNA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림. ISWGNA의 자문단 회의가 UN 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에 열릴 것임
- OECD 금융계정팀의 이자 발생의 대한 결정이 빠른 것 같다는 것을 표현하였고 이팀은 부채접근은 국민계정과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ISWGNA

는 이 이슈를 부채에 대한 국제워크샵을 개최해 줄 것을 요구. 참가자는 국민계정 및 금융계정관련 통계학자와 계정표준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ISWGNA는 이 요구를 접수했고 다음 모임(2002. 10. 14-15)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

- 호주는 SNA의 재검토는 기준의 개정을 포함하여 자료의 문제, 전문가의 선택 등 방대한 작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 IMF는 BOP위원회에서 2007년을 위한 새로운 BOP 매뉴얼을 준비. BOP위원회는 논의를 위한 50개의 다른 항목들을 정리하여 캔버라 그룹 모임에서 새매뉴얼 초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임
- 4개의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두 개는 호주와 미국이 1993 SNA의 전반적인 개정에 관한 이슈로 발표하였고 이스라엘은 93SNA기준에 맞는 R&D자료의 작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OECD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발표. 존홉킨스 대학의 시민사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UNSD에 의해 발간된 비영리단체를 위한 위성계정 매뉴얼의 소개가 있었음
- 미국은 논의되어야 할 페이지는 적어도 1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OECD는 충분한 결론에 도달한 이슈들에 한하여 자문에 응하고 이는 아직 비공식적인 것임을 확인
- 2003년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2003년 NAEM은 잠정적으로 10월 7일에서 1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함.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각의 태스크포스와 비금융자산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로 캔버라 그룹 재가동하여 3개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것으로 함. 또한 계정의 발생주의 원칙과 정부의 경계(borderline), 연금체계등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에 대한 session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 NAEM과 FSWP, BoP위원회와 더많은 협력을 요구. 스톡옵션, 부실대출 등이 논의 되어야 하고 영국과 노르웨이는 국민계정의 실제적인 작성과정에 관한 session을 제의
- OECD는 논의에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 이슈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자문을 하고 2003년 NAEM 프로그램은 보험, 금융서비스, 비금융자산, 일반정부의 발생주의 및 경계관련 이슈로 하며 하루는 국민계정 및 금융계정 등의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session을 구성하고 또한 한 session은 EDG와 ISWGNA에 의해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발표로 구성할 것을 결정함

<SNA와 신경제>

Beyond 1993 :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the new economy

- Rob Edwards, Peter Comisari, Tony Johnson (ABS) -

1) 개요

경제통계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포착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자본측정 매뉴얼 : 고정자본소모와 자본비용을 자가소비생산자의 생산물의가치로 평가
- 새로운 이슈 : 무형의 처리, 즉 지식과 인적자본의 처리, 자본측정, 금융시장의 이슈 등
- 신경제 : 무형자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지속적인 성장, 생산성의 향상과 관련한 이슈, 지식 및 인적자본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과 관련한 거래 환경의 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변화, 소득과 부의 증가 이에 따른 소비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와 관련한 이슈

2) Agenda

93SNA의 기본개념의 수정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방법론의 개발 등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위성계정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추구

- 지식 및 인적자원

93SNA의 자산에서 인적자본은 제외되어있음

반면, 지식산업과 관련하여 인적자본의 측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인적자본은 경제성장,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개념 및 측정방법에 있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적자본의 주요 결정요인은 교육과 건강이며 이에 대한 지출 등으로 추정가능

- R & D

93SNA : R&D에 대한 지출, 광물개발 및 예술품 원본에 대한 지출을 고정자본으로 처리,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 ICT

• OECD task force : software에 대한 측정에 대한 연구보고 (2002, meeting)

software licences ; original(licence to reproduce)뿐만 아니라 copy(licence to use)까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형성으로 보아야함

data base : 93SNA에 큰 data base는 자본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질적인 권고안(practical guideline)도 없음

software price deflation : high tech product에 대한 quality adjustment가 필요하고 따라서 quality adjusted price index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가격조사가 매우 자주 이루어져야 가능

computer hardware prices : hedonic 함수로 품질향상에 따른 가격의 영향분석 반영

mobile phone licences : 생산되지 않은 무형자산으로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앞으로 자산추정 전문가그룹인 Canberra Group에서 연구 예정

- 기타무형자산
 - OECD의 매뉴얼 ‘자본측정’에서도 향후 영화 음악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측정 및 분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금융시장에 대한 이슈
 - 금융수단의 끊임없는 변화와 금융수단거래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중개인의 생산을 고려하여 이미 금융중개서비스의 측정(FISIM: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등에 반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 필요
 - 금융서비스의 측정(measurement of financial services) : 금융자산의 팔고사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을 통한 금융중개업자의 잉여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연구 지속
 - 중앙은행의 생산(output of central banks) : 중앙은행의 기능이 규제에 있다면 그 운영비용을 중앙은행의 생산으로 보아야 하나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퇴직수혜금(benefit superannuation schemes) :
 - 고용주 부담금과 퇴직수혜금 차이에 대한 처리
 - 비기금형 퇴직금(unfunded superannuation) :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비기금형 퇴직금(비기금형 사회보험 수혜금의 일종)을 귀속 사회부담금으로 처리(93SNA)하는 것에 대한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생명보험(non-life insurance) : 보유손익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93SNA의 규정을 바꿔서 투자소득(추가보험료 또는 추가부담금으로 처리)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제기
- 자본측정 이슈
 - 국방자본과 자가계정생산자 자본의 임대가치 측정
- 소득과 저축
 - 위성계정으로 소비자행동 등의 분석목적에 맞게 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과 저축을 측정하는 대안 제시, 즉 자본이득과 보유이익 등을 포함하여 측정
 - 반면, 93SNA 권고안에서는 소득은 반드시 생산에서 발생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과 경제
 - 경제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자연자원의 소모 즉 광물자원의 소모, 산림의 제거 등에 대한 처리 연구 필요

붙임 5. 주요발표논문

0. General Information
1. Various measures of the saving rate and their interpretation (France)
2. Alternative measures of savings (Australia)
3.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OECD)
4. Lessons from the software task force (OECD)
5. First report of the task force on insurance (OECD)
6. The NAWWE project (OECD)
7. New definition of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s (OECD)
8. The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OECD)
9. Questionnaire on the measurement of housing services in the national accounts (OECD-Eurostat)
10. Various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PPPs (France)
11. The treatment of general government pension schemes (IMF)
12. Principles of accrual recording of general government accounts in the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Australia)
13. First report of the task force on financial services (OECD)
14. A comparison of household assets: USA/Japan/Europe (OECD-Pioneer-OEE)
15. Valuing unlisted shares: the contribution of the INSEE financial links survey (INSEE)
16. The macro-economic statistical treatment of reverse transactions (IMF)
17. The macro-economic statistical treatment of non performing loans (IMF)
18. The treatment of stock options in the national accounts (Eurostat)
19. Progress report on stock options (Australia)
20. Sources of data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mpany profitability (UK)
21. Information on ISWGNA proceedings (UNSD)
22. Manual on NPIs (France)
23. Organisation of international harmonisation and agenda for 2003 (OECD)
24. Beyond 1993: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the New Economy (Australia)
25. The RD-SNA task force (Israel)
26. Group on the Measurement of Non-Financial Assets (CANBERRA II)
- Objectives and mandate (OECD)
27. Scoping paper: issues for consideration by the group (Australia)

붙임 5. 주요 발표 논문

- 0. General Information
- 1. Various measures of the saving rate and their interpretation (France)
- 2. Alternative measures of savings (Australia)
- 3.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OECD)
- 4. Lessons from the software task force (OECD)
- 5. First report of the task force on insurance
- 6. The NAWWE project (OECD)
- 7. First report of the task force on financial services (OECD)
- 8. The treatment of stock options in the national accounts (Eurostat)
- 9. Information on ISWGNA proceedings (UNSD)
- 10. Manual on NPIs (France)
- 11. Group on the Measurement of Non-Financial Assets (CANBERRA II)
 - Objectives and mandate (OECD)